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5. 8. 28.

운영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8월 14일

나. 발 의 자: 이순우 의원 외 5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8. 2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순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❍ 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(안 제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□ 개정 배경 및 취지

❍ 2023년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, 영등포구의회는 같은 해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

한 조례」를 제정(2023.09.15.)하여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음.

○ 다만, 현행 조례의 지원 규정에는 “예산의 범위”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재정 지원 범위가 불명확한 상황임.

- 아울러, 행정안전부의 「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에서는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회운영공통경비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 업무추진비를 조례에 직접 지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지원 규정에 “예산의 범위”를 명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□ 주요 내용으로

○ 안 제5조(지원 등)는 교섭단체 지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, 기존의 개별 지원 항목을 삭제하고 “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” 지원으로 일원화함.

□ 검토 결과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지원 규정에 “예산의 범위”라는 문구를 규정하여 교섭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원내활동 수행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순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564

발의연월일: 2025. 8. .

발 의 자: 이순우、정선희、이규선 전승관、임헌호、차인영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교섭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지원(안 제5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조”를 “제4조의”로, “다음 각 호의 사항”을 “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지원 등)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1.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 2.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원	제5조(지원 등) ---- 제4조의 ----------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----. <삭 제> <삭 제>